

# 직업성 질환의 기록 및 보고

신동천

산업장내 근로자들의 질병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 직업성 질환의 타당성 있는 유병자료와 발생에 관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직업성 질환의 정확한 분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서 분류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정확한 보고를 수행할때 그 타당성과 이용성이 높아진다.

Dr. Paul Kotui은 1988년 1월 New York Academy of Science 회의에서 산업보건 전문가들 까지도 아직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정확한 정의와 분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는 의무기록(medical record keeping)을 틀리게 보고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이 제도가 기록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1986년 발간한 “직업성 상해 및 질병 기록에 관한 지침서” (Recordkeeping Guidelines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를 OSHA에서는 직업성 질환 기록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직업병은 진단한 시점에서 어떠한 질병도 기록이 가능하나 상해는 중증도를 평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업병은 그 요인에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증상이나 검사소견으로서 기록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흉막반(pleural plaque)과 석회화(calcification)가 나타나면 더이상의 증거 없이도 Asbestos노출만 확인되면 Asbestosis로 기록이 가능하다. 다른 예로는 단순 폭로만으로는 직업병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Benzen에 일시 과노출된 경우 OSHA기준에는 직업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tennis elbow나 carpal tunnel syndrome과 같이 반복적인 물리적 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장해는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분류도록 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직업성 질환의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성 질환이란 고용상태와 관련되어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이상 조건이라 정의되며 독성물질의 흡입, 흡수, 접촉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서의 분류기준과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직업성 질환을 표준화 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며 앞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사실 직업성 질환이 상당수준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우선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직업병을 진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각 사업장이나 건강관리기관에서 진단된 환자의 보고체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성 질환의 보편타당한 분류체계와 정확한 기록은 앞으로 산업보건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필수적이고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